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法律(案)

1. 提案理由

1980年 5月 18日을 前後한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및 傷痕을 입은 者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名譽를 回復시켜주고 그에따라 關聯者와 그 遺族에게 實質的인 補償을 함으로써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며 나아가 國民和合과 民主發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關聯者 및 그 遺族에 대한 補償등을 支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下에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支援委員會와 補償등의 審議·決定을 위하여 光州直轄市에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審議委員會를 두며, 補償審議委員會에는 關聯者 또는 그 遺族에 該當하는지의 審査와 關聯傷痕者의 障害等級 判定을 위하여 各各 10人 以內的 委員으로 構成된 分科委員會를 둠(案 第3條, 第4條).

나. 關聯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한 補償金은 死亡者와 行方不明者에 대하여는 死亡 또는 行方不明 당시의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將來就業可能期間을 給한 金額에서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控除한 金額에 補償決定時까지의 利子를 加算한 金額을 支給하고 傷痕者에 대하여는 必要한 요양으로 인한 收入損失額과 身體障害에 따른 傷痕당시의 月給額등을 基準으로 한 勞動力喪失補償額을 合한 金額에 補償決定時까지의 利子를 加算한 金額을 支給하도록 具體的으로 明示함(案 第5條).

다.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生活를 補助하기 위하여 寄附된 誠金으로 支給하는 生活支援金에 대하여 政府가 그 財源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도록 함(案 第7條).

라. 補償審議委員會의 補償金 支給申請에 대한 棄却決定 뿐만 아니라 支給決定에 不服하는 者도 補償審議委員會에 再審議를 申請할 수 있도록 함(案 第11條).

마. 補償審議委員會에서는 補償등을 위하여 關聯者·證人·參考人으로 부터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고 行政機關등에 대하여는 必要한 協調를 要請할 수 있도록 함(案 第18條).

비. 補償支援委員會가 生活支援金 및 光州民主化運動과 聯關된 事業의 費用을 支援하기 위하여 誠金을 募金할 수 있도록 함(案 第20條).

사. 政府는 光州民主化運動과 聯關된 事業이 推進되는 경우에는 그 費用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도록 함(案 第21條).

아. 이 法 施行以前에 光州直轄市가 행한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의 該當與否審査와 關聯傷痍者의 障害等級 判定을 위한 調査·檢診등은 이 法 第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分科委員會가 審査 또는 調査·檢診한 것으로 보도록 함(附則 第2條第2項).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案)

第1條(目的) 이 법은 1980年 5月18日을 前後한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傷痕를 입은 者(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名譽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關聯者와 그 遺族에게 實質的인 補償을 함으로써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며 나아가 國民和合과 民主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遺族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遺族”이라 함은 民法의 規定에 의한 關聯者의 財產相續人을 말한다. 다만, 行方不明된 者의 경우에는 그가 行方不明된 당시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財產相續人이 될 者를 遺族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은 民法의 規定에 의한 財產相續分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補償金과 生活支援金의 支給을 받을 權利를 共有한다.

第3條(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支援委員會) ① 이 법에 의한 關聯者 및 그 遺族에 대한 補償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下에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支援委員會(이하 “補償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補償支援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關聯者 및 그 遺族의 補償등에 관한 지원
2. 關聯者의 名譽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3.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지원을 위한 誠金의 募金 및 管理
4.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補償등에 관한 財源對策의 강구
5. 光州民主化運動과 聯關된 事業의 지원
6. 기타 關聯者 및 그 遺族의 지원

③ 補償支援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와 關係公務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 補償支援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審議委員會) ① 이 法에 의한 關聯者 및 그 遺族에 대한 事實審査 기타 補償등의 審議·決定을 위하여 光州直轄市에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審議委員會(이하 “補償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補償審議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關聯者 또는 그 遺族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審査·決定
2. 關聯 傷痕者의 障害等級 判定
3.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報償金등의 審議·決定 및 支給
4. 補償支援委員會에 上程할 議案의 準備 및 補償支援委員會로 부터 委任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關聯者와 그 遺族의 지원

③ 補償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光州直轄市長이 되고 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와 關係公務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 補償審議委員會는 第2項 第1號의 審査와 第2號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⑤ 補償審議委員會와 分科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補償金) ① 關聯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算出한 金額에 補償決定時까지의 法定利率에 의한 利子を 加算한 補償金を 支給한다.

1.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으로 확인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때를 基準으로 그 당시의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장래의 就業可能期間을 곱한 金額에서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を 控除한 金額
2.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痕를 입은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는 다음의 金額을 合한 金額

가. 필요한 療養으로 인하여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의 收入에 損失이 있는 경우에는 그 療養期間의 損失額

나. 傷痕를 입은 者가 身體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障害로 인한 勞動力 喪失程度에 따라 傷痕를 입은 때를 基準으로 그 당시의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勞動力喪失率 및 장래의 就業可能期間을 곱한 金額에서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を 控除한 金額

②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痕를 입은者가 그 傷痕 이외의 원인으로 死亡한 경우에는 그가 生存하는 것으로 보아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따라 補償金を 支給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은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長, 郡守, 區廳長, 稅務署長의 證明이나 기타 公信力있는 證明에 의하고 이를 證明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を 算定함에 있어서는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費를 控除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可能期間과 障害等級 및 勞動力喪失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醫療支援金) ①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痕를 입은者 중에서 이法 施行 당시 그 傷痕로 인하여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常時 介護 또는 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治療·介護 및 補裝具購入에 實質적으로 소요되는 費用을 一時에 支給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支援金を 支給할 때에는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を 控除하여야 한다.

第7條(生活支援金) ① 補償審議委員會는 關聯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 그 生活を 補助하기 위한 支援金を 支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活支援金은 關聯者의 지원을 위하여 寄附된 誠金으로 支給할 수 있으며 政府는 그 財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8條(補償金등의 支給申請) ① 關聯者 또는 그 遺族으로서 이 法에 의한 補償金·醫療支援金·生活支援金(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支給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證憑書類를 첨부하여 書面으로 補償審議委員會에 補償金 등의 支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第9條(審議와 決定) 補償審議委員會는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 이내에 그 支給與否와 金額을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行方不明된 者의 경우에는 120日 이내로 한다.

第10條(決定書 送達) ① 補償審議委員會가 補償金등을 支給하거나 支給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30日 이내에 그 決定書正本을 申請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送達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の 送達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1條(再審) ① 補償審議委員會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사항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를 送達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補償審議委員會에 再審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 補償審議委員會의 再審議 및 送達에 관하여는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이 경우 第9條중 “90日” 및 “120日”은 각각 “60日”로 본다.

第12條(申請人의 同意와 補償金등의 支給) ① 補償決定書正本을 送達받은 申請人이 補償金등을 支給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에 대한 同意書를 첨부하여 補償審議委員會에 대하여 補償金등의 支給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 補償金등의 支給에 관한 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補償金등의 支給을 받을 權利의 보호)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第14條(租稅免除)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에 대하여는 國稅 및 地方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15條(決定前置主義) ①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에 관한 訴訟은 補償審議委員會의 補償金등의 支給 또는 棄却의 決定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제기는 決定書正本(再審議決定書正本을 포함한다)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第16條(다른 法律에 의한 補償등과의 관계 등) ① 이 法은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禮遇를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 決定은 申請人이 同意한 때에는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입은 被害에 대하여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裁判上 和解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17條(補償金등의 還收) ① 國家는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補償金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還收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償金등의 支給을 받은 경우

2. 過誤支給된 경우

3.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行方不明으로 확인된 者가 生存하고 있거나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없이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것으로 判明된 경우.

② 國家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는 國稅徵收의 例에 의한다.

第18條(事實調查 및 協調義務) ① 補償審議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補償등을 위하여 關聯者, 證人 또는 參考人으로부터 證言 또는 陳述을 聽取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檢證 또는 필요한 調査등을 할 수 있으며,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調要請을 받은 關係機關은 다른 業務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第19條(時效)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을 받을 權利는 그 補償金등의 支給決定書正本이 申請人에게 送達된 날로부터 1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効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20條(誠金の 募金) ① 補償支援委員會는 關聯者 및 그 遺族에 대한 生活支援金 및 光州民主化運動과 聯關된 事業의 費用을 지원하기 위하여 誠金を 募金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誠金募金은 寄附金品募集禁止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

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21條(財政支援) 政府는 光州民主化運動과 聯關된 事業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0日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전에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被害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申告된 것은 이 法 施行日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者에 대하여 光州直轄市가 行한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에 해당하는지의 與否審査와 關聯傷痍者의 障害等級判定을 위한 調査·檢診등은 이 法 第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分科委員會가 審査·調査 또는 檢診한 것으로 본다.